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54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등 근로 소요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백혜련의원안)	2

I. 개요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54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17.

(3) 회 부 일 : 2025. 7.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등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의 경우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 작업복·유니폼 등에 지급한 비용 등 근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등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제공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등 근로 소요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백혜련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u>근로 소요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95조의3 신설)</u> ○ 내용: 다음의 근로 소요경비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 신설 -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 구직을 위하여 취업알선 업체·기관에 지급한 비용 - 작업복 등 근무 시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피복 및 보호장구 구입 비용 * 공제대상금액: 소요경비별로 연간 100만원 한도

* 백혜련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42)

□ 개정안은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구직을 위하여 취업알선 업체·기관에 지급한 비용, 작업복 등 근무 시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피복 및 보호장구 구입비용 등 근로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소요경비별로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① 비자발적으로 근무지가 이전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② 일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작업복 등 근무시 필수적으로 피복 및 보호복을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구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③ 구직을 위하여

취업알선 업체 및 기관 등에 지급한 비용 등은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용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해당 비용들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해당 항목들은 ① 현재 세액공제 중인 의료비(건강권), 교육비(교육권), 월세(주거권) 등과 유사한 선상에서 지원해야 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높지 않고, ②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로서 이미 근로소득공제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¹⁾.

둘째,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33%가 면세자인 상황에서 동 개정안을 통한 세액공제 한도의 확대는 해당 정책대상자들에게 효과성이 크지 않은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이사·구직비용·피복비 등의 구체적 범위가 설정되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개정안은 지원항목들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정도·자발성 여부·비용의 범위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내용의 구체화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음. 따라서 지원 범위의 설정, 근로 관

1) 기획재정부의 의견임.

련성의 입증 등이 곤란함에 따라 집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활용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개재될 우려도 있어 보임.

넷째, 2023년 총급여 합계액 923조원 중 소득공제는 380조원²⁾으로 공제율이 41%로 높은 수준이므로, 추가적인 공제의 신설에는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³⁾

문 의 처
02)6788-5149

2) 근로소득공제 206조원, 인적공제 57조원, 신용카드소득공제 36조원 등

3) 기획재정부의 의견임.